

보증번호: PEBKRA018822

보증처 : 리치몬트 코리아 공식 온라인 사이트 재화 구매자들

주채무자 명칭 : (주) 리치몬트 코리아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 남산

보증한도액 : KRW150,000,000 (금일억오천만원정)

보증기간 : 2025년 03월 17일부터 2026년 03월 16일까지

피보증 채무의 내용

주채무자가 운영하는 리치몬트 코리아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재화의 전자상거래에 있어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재화의 공급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대금 환급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매자인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구매자의 결제대금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청구한 구매자에게 보상합니다.

청구기간 : 보증기간 만료 이후 2개월 이내에 보증처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없는 때에는 본 보증서 원본이 반환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은행의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합니다.]

특약사항 : 본 보증서에 첨부된 지급보증거래 이용약관(보증처 용) 제 3 조에 따라,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이하 "은행")이 본 보증서의 조건에 의하여 보증처에 지급을 한 경우, 이후에 다른 보증처에 의한 이행 청구가 이루어질 경우 그 지급액 만큼 본 보증서의 보증한도액은 감액됩니다.

본 보증서에 따른 이행 청구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보증처가 채무 불이행 사유로 손해를 입었음을 확인하는 진술서;
- 2) 주채무자가 작성한 채무불이행 사유에 대한 현금 환불 거절 확인서;
- 3) 구매 증빙서류 (현금영수증 등); 및
- 4) 본 보증서의 원본 또는 주채무자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본 보증서의 사본

본 보증서에 따라 이행 청구를 한 보증처에 대한 지급은 청구가 접수된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본 보증서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은 오로지 은행에 의해 대한민국 법률(법률, 명령,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을 포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해집니다. 은행은 전쟁,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에 의한 환전 또는 이체의 제한,

징발, 강제 이체와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보증 채무 불이행 및 이에 따른 채권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은행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증인은 UN, EU 또는 미국의 제재 목록에 등재된 자, 또는 해당 미국 연방 및 주 정부의 보이콧 금지법, 테러리즘 금지법, 자금세탁방지법, 미국 제재 법이나 홍콩 금융당국, 영국, 대한민국이 발표, 집행 및 이행하는 제재를 포함한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거래가 금지된 자에게 본 보증서에 따른 자금 이체 및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보증서는 은행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양도 또는 이전될 수 없으며, 또한 관련 제한에 따라 보이콧(Boycott), 제재(Sanctions) 또는 통상금지(Embargo)가 적용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양도 또는 이전될 수 없습니다.

본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 및 이에 첨부된 지급보증거래 이용약관(보증처용)에 따라 은행은 주채무자의 피보증채무를 지급할 것을 보증합니다.

본 보증서는 청구보증통일규칙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ICC Publication No. 758)의 적용을 받으며, 준거법은 한국법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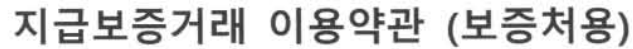
SY LEE, GTS



JW KIM, GTS



2025년 03월 17일
홍콩상하이은행서울지점





대한민국정부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Revenue Stamp of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고 유 번 호 : 2509918-028881672

(Certificate No.)

수 입 인 지 금 액 : 10,000원

(Stamp Duty Amount)

성 명 (상 호) : 홍콩상하이은행

(N a m e)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1028400679

(Registration No.)

발 급 처 : 인터넷 / 신한은행

(Stamping Channel)

발 급 일 자 : 2025.0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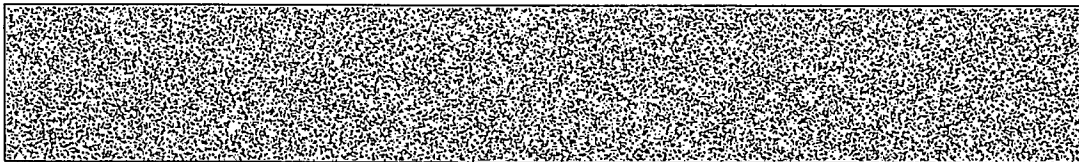
(Certificate Issued Date)

기 획 재 정 부 장 관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 전자수입인지를 위변조 및 복사(copy)하여 중복 사용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2조 제4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사용 방법 >

* 전자수입인지는 1회 출력만 가능하며(프린터 시험인쇄 요망), 제출서류 1건의 과세금액을 1매로 첨부(添附)하여 사용합니다.

< 전자적 소인 처리 방법 >

* 행정기관에 전자수입인지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하는 공무원이 전자적 소인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접수한 공무원의 전자적 소인처리 절차는 gov.e-revenuestamp.kr에서 수행)

*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인(私人)간에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는 경우, www.e-revenuestamp.or.kr 에서 전자적소인 처리하여 전자수입인지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부정한 재사용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소인처리된 전자수입인지는 사용 및 환매가 불가하오니 신중한 소인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환매 방법 >

* 사용하지 아니한 전자수입인지는 구입처에 환매(액면금액의 97% 상당액)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발급분의 경우 우체국 및 금융회사(은행 등)를 통해 환매가 가능합니다.